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9. 27 선고 2024가단1980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4. 8. 23.

판 결 선 고 2024. 9. 2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,740,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4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.9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B은 2024. 1. 5.경 원고에게 별지 기재 보증서(이하 ‘이 사건 보증서’라 한다)를 작성하여 주었고, 피고 C, D은 이 사건 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하였다.

나. 이 사건 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○ 원금 52,000,000원, 납부된 이자 14,259,200원, 환수금 37,740,800원, 확인 입금자 : 피고 D

○ 피고 B은 원고가 투자한 투자처(E)의 보증인으로서 2024. 3. 20.까지 투자한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원금을 환수받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2024. 3. 20.까지 원금 전액을 환수해 주어야 한다. 기한 내에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월 1.66%의 이자가 발생하도록 한다.

○ 피고 B에게 투자원금을 환수받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 C,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조건 또한 피고 B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.

다. 원고는 현재까지 투자처인 E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환수금 37,740,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관련 법리

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. 다만 당사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처분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거기에 담긴 당사자의 의사는 그 법률행위의 동기와 목적, 당사자 사이의 관계, 그 문서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와 사회일반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문언 자체의 표현에만 얽매일 것은 아니다. 특히 채무부담의 의사를 나타내는 처분문서가 ‘차용증’이나 ‘현금보관증’ 또는 ‘지불각서’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문서에 표현된 용어의 법적 의미를 엄밀하게 인식하여

소비대차 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등의 의사였던 것만은 아니고, 그 기재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므로 그러한 사정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2다56573 판결 참조).

나. 판단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보증서는 피고 B이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환수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작성해 주었고, 피고 C, D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환수금 37,740,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4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.92%(=월 1.66% × 12개월)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원고가 피고들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증서를 받아낸 것이고 이는 피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피고들은 또한, 피고 B의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회수 불가능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고, 피고 B의 보증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그 부종성에 의해 피고 C, D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가 주채무자인 E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환수금 37,740,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주채무자인 E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 점, 피고 B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E로부터 2024. 3. 20.까지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환수금 37,740,800원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, 피고 C, D은 피고 B과 동일한 조건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보증서에

연대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환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,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유석동

보증서

투자자

'갑'

(주민등록번호: [redacted])

주소: 서울 강남구 [redacted]

전화번호: [redacted]

보증인

'을'

(주민등록번호: [redacted])

주소: 경기 고양시 [redacted]

전화번호: [redacted]

금액:

원금 52,000,000원

납입금 이자 14,249,200원

환수금 37,750,800원

확인 인자 [redacted]

당기인 '을'은 '갑'이 투자한 투자자([redacted])의 보증인으로서 2024.년 3월 30일 까지 투자한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원금을 환수받지 못 할 경우 2024.년 3월 20일 까지 '을'은 '갑'에게 원금 전액을 환수 해 주어야 한다. '을'이 원금을 환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즉시 해당 20. 일 이후 기준으로 월1.66%의 이자가 발생하도록 한다. '을'은 '갑'의 투자원금 환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불 이행 시 '을'의 재산을 환가하여 그 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환수 받을 수 있다. '을'에게 투자원금을 환수받지 못하게 될 경우 '병' 그리고 '정'은 연대 보증인으로서 '을'과 동일하게 환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조건 또한 '을'과 동일하게 적용된다.

연대 보증인

'병'

(주민등록번호: [redacted])

주소: 송파구 [redacted]

전화번호: [redacted]

'정'

(주민등록번호: [redacted])

주소: 서울 송파구 [redacted]

전화번호: [redacted]

김제 / 홍승

